

(첨부)

定 款

2014. 02.17. 제정(설립)

2019. 03. 29. 전면개정

2019. 10. 10. 일부 개정

2019. 11. 21. 일부 개정

2020. 02. 03. 일부 개정

정관 변경 보고

주식회사 초록에프앤비

정 관

제 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초록에프앤비(F&B)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음료류 생산
1. 조미식품 생산
1. 각호에 대한 도, 소매
1.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강원도 횡성군에 둔다.

제4조(지 점)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과 주권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주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8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8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의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의 4/1 이하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

률을 정한다.

- ③ 보통 주식의 배당률이 우선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 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 증자 또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 주식으로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채권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12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7. 전략적 제휴나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국인 및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 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 189 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기와 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장외등록 및 상장이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 조에서 정하는 가격에 의하고, 장외등록 및 상장 이후에는 제 1 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전 3개월의 평균종가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일반공모증자 등)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⑤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 업무 취급 규칙에 따른다.
-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위 각 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명부의 폐쇄)

-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종료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 ② 제 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주주를 해당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제23조(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등의 신고)

-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등을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해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3 장 사 채

제24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5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2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7조(교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과, 교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교환사채는 본 회사의 보통주식과 교환한다.

제2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장 주 주 총 회

제29조(소집)

-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30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 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 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3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분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도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사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수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 ④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의결권 등)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임 원

제36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 끝날 때는 정관으로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③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 ④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9조(대표이사)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1인 이상 두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에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제41조(업무집행)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42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 ①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조, 제 397조의 2 및 제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의 유고 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45조(이사회)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일 때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때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이사의 겸업허용
13. 주식의 양도승인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5.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7.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8조(이사회의 결의)

- ①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정한다
- ②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51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기말에 결산 한다.

제52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금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주식으로 배당하거나 기타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본 회사는 김용주에게 회사인수 시점부터 일정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주식을 부여하기로 하며 지급시점은 영업이익이 5억 이상인 때에 회사의 인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무상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25,000주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기로 한다.

⑤ 본 회사는 김용주에게 영업이익이 10억 이상이 된 경우 회사의 인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기로 한다.

제55조(중간배당)

- ①당 회사는 상법 제462조 3에 의한 중간배당을 연 1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57조(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조 (상법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을 준용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1월 21일 주주총회 승인 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규정) 본 개정 정관의 시행 전에 결의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해 결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초록에프앤비"의 정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별첨1: 임원보수지급규정

별첨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별첨3.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2020년 02월 03일

주식회사 초록에프엔비



대표이사 김용주

사내이사 황연수



<별첨1>

임원보수지급규정

제 1조 (목적)

이규정은 정관 제43조 ①항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으로 당사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임원으로 등기된 자로서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한다.

제 3조 (지급대상 임원)

이 규정에 의한 보수액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4조 (보수의 대상 기간 및 구성)

당사 임원의 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며, 정기급여와 상여금으로 구성한다.

제 5조 (정기급여)

- ①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1년간 지급받을 정기급여 총액은 10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② 이사회는 매년 직전연도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①항의 한도 내에서 임원의 정기급여를 결의하고, 각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임원 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③ 정기급여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계약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

제 6조 (상여금)

-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정기급여의 연간합계액의 400%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며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③ 연도 중에 상여금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

제 7조 (특별상여금)

- ① 당사는 임원에게 경영성과와 그 기여도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결의가 있을 경우 임원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제 8조 (상여금 등의 지급 시기)

정기 상여금은 보수계약서에 기재된 지급 시로부터, 특별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재정즉시 시행한다.

제 2조(준용규정) 본 규정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의 순으로 해당규정을 준용 한다.

〈별첨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3조의 ②항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서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원의 정의)

-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임원으로 등기된 자로서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한다.
- ②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임원 계약을 한 임원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에서 제외한다.

제 3조 (지급조건)

- ① 임기 만료 퇴임
- ② 사임
- ③ 재임 중 사망
- ④ 주택구입,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
-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 4조 (퇴직금의 계산)

- ① 퇴직금은 [직전 3년간 평균연봉의 1/10) × 임원 재임연수 × 지급기준율] 로 한다.
- ② 직전 3년간 평균연봉 = (3년간 임금총액 + 3년간 상여금총액) / 3
- ③ 임원의 지급기준율은 3배수로 한다

제 5조 (근속연수의 계산)

- ① 근속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 6조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계속하여 근속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한 날(중간정산 대상 기간)의 다음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조 (특별퇴직금 지급)

- ① 사망(장해 1등급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아래에 의거 계산된 특별퇴직금을 전3조의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구 분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	업무 외 질병 또는 재해
사망위로금	5억과 1,300일 평균임금 중 큰 금액	3억과 1,000일 평균임금 중 큰 금액
장의비	120일 평균임금	90일 평균임금

- ②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 ③ 특별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장해등급 확정일이 퇴직일 이후인 경우는 장해등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전1항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퇴직후 동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퇴직으로 본다.
- ⑤ 회사의 갑작스런 자금사정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금액을 조절할수 있다.

제 8조 (퇴직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현금 외의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 9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재정즉시 시행한다.

제 2조 (준용 규정) 본 규정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민법의 순으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3>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3조의 ③항에 의한 임원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임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원퇴직금 외에 별도로 임원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상근이사,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이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유족보상금은 임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

- ① 유족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② 유족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위	유족보상금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업무외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대표이사	평균임금의 1,300일분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이사, 감사	평균임금의 1,300일분	평균임금의 1,300일분

제5조 [유족보상금 지급방법]

임원유족보상금은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유족보상금 지급시기]

임원유족보상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장의비의 지급]

임원유족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범위/순위]

임원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임원이 사망할 당시 그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자
- ② 자녀 또는 손자녀
- ③ 형제자매
-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으로서 최근친인자

또한 임원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 중 임원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9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

“임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이란 임원이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임원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②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임원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제10조 [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정지 등]

임원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 ① 사망한 경우

- ② 재혼한 때 (사망한 임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사망한 임원과의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 ④ 임원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임원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재정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본 규정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민법의 순으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